

# 건설업종별 영업 범위 제한 제도의 개선 방안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영업 범위를 중심으로 -

2016. 3

최민수 · 나경연 · 홍갑표

|                                  |    |
|----------------------------------|----|
| ■ 논의 배경 .....                    | 4  |
| ■ 건설업 영업 범위 및 업역 제한의 실태 .....    | 5  |
| ■ 외국의 건설업 영업 범위 제한 여부 .....      | 14 |
| ■ 영업 범위 제한 폐지 관련 내용과 찬반 논의 ..... | 18 |
| ■ 건설업 영업 범위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 .....   | 24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요 약

- ▶ 최근 건설 업역 관련 논란이 증가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건설업종간 영업 범위 폐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됨.
  - 영업 범위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영업 범위 규제에 따른 업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입찰참가 자격 결정시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하며 종합건설업체도 하도급 시공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영업 범위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발주자 역량이나 공공 입찰제도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영업 범위 폐지시 부적격자의 수주 확대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2008년에 종합/전문 건설업종 간 겸업 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겸업 등록을 통하여 해당 업종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업종별로 면허를 부여하더라도 공사 발주나 수주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재량에 의거하여 다양한 생산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함.
  - 면허제도나 업종별 영업 범위 규제가 없더라도 공사 발주 과정에서 과거의 공사 실적 제한이나 해당 기술자 보유 등과 같은 입찰참가 자격을 통하여 최적의 시공자를 선별해내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 앞으로 건설업 등록제도 및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전제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종 간 영업 범위 제한을 완화해 나가되, 건설업 등록제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 업종을 등록한 후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영업 범위 제한을 완화할 경우 양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소규모 복합공사와 부대공사 규정을 적용하여 발주할 경우는 소규모 단순 공사로 국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모두에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인 규제에 기인해 투자 노력을 억제하면서 시장 성과만 추구하는 형태로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종합-종합 건설업체 간 복합공사 하도급은 특정 요건 하에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특정 복합공사(아파트 상가, 터널, 교량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업체로의 성장을 촉진하고, 책임 있는 직접 시공을 정책적으로 장려할 수 있음.
- ▶ 국내에서는 건설업을 종합과 전문 건설업으로 구분하고, 건설업종별로 등록제도를 두고 있으나, 업종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건설업종간 업역 분쟁을 야기하는 경향이 존재함.
  - 따라서 건설업 등록제도를 두고 있는 이상, 건설업종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업종별 영업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이 요구됨.